

포항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고용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‘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이에 관내 중소기업 중 주변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, 빌라, 원룸 등을 임차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는 기업에서는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4월 1일

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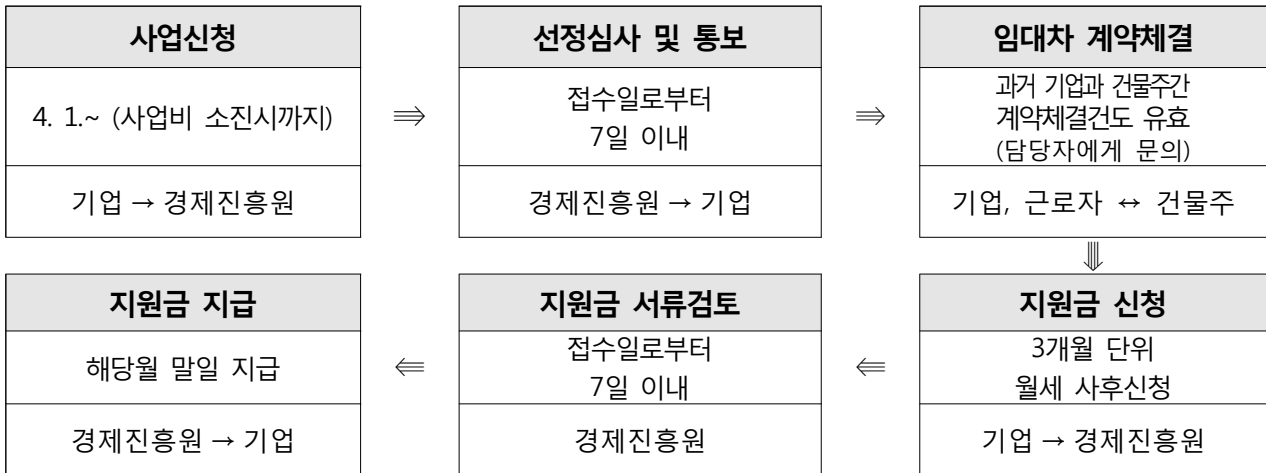
1

사업개요

- 사업명 : 포항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
- 사업목적 :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, 생활안정을 통한 인력수급 애로 해소 및 일자리 창출
- 접수기간 : 2019. 4. 1. ~ 사업비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
- 주요내용 :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,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의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, 빌라, 원룸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료(월세) 80% 지원

2

사업절차



3

지원내용 및 조건

○ 지원기간 : 사업 선정일(또는 계약서 입주일 중 늦은 날)로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

○ 지원내용

- 관내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, 빌라, 원룸 등 공동주택(기업내 기숙사 제외)
- 기숙사 지원 근로자는 5년 미만 근로자
 - 선정된 근로자는 관내 기숙사로 전입신고 시 지원함
 - 기업당 기숙사 이용 근로자 20%는 입사 6개월 미만의 신규 채용자
- 임차 기숙사 월 임차료(월세)의 80%이내 지원(**1인당 월 30만원, 1기업 10명한도**)
- 기숙사 계약은 사업주, 근로자 명의로 하며, 임대차 계약(월세)을 체결하여 기숙사 제공시 20%는 사업주 부담 (보증금 및 관리비는 이용근로자 부담 가능)
- 기숙사 이용근로자는 필히 4대 보험에 전부 가입되어야 함.

※ 공고일 이전부터 제공하고 있는 기숙사도 포함하나 비용은 선정일부터 지원

○ 선정 및 지원제외 대상(공고일 현재)

- 휴.폐업 중인 기업 및 허위사항으로 신청한 기업
- 사업주의 친인척 관계인 근로자
- 사업주 및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
-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
-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, 외국인 근로자, 관리자급 근로자(이사급이상)

- 채용지원금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
-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
- 파산·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
-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기업
-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불응하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
-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지원받는 기간 동안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사실이 있는 기업
-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※ 지원이 확정된 이후라도 상기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 전액에 대해서 환수조치

4 지원업체 선정계획

- 선정규모 : 지원업체 10개사 50명 내외
 - 단, 기숙사 지원한도 현황에 따라 선정 규모는 변경 가능
- 선정방법 : 서류가 완비된 업체를 선착순으로 선정(예산 소진시까지)
 - 서류 검토시 본 사업 목적과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업체 대상에서 배제
- 선정 후 절차
 -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별첨된 [서식 4]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약정서를 송부해야 함(추후 안내 예정)
 - 단, 과거에 사업주와 건물주 간 체결된 계약건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필요 없음(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)
- 기타사항
 -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공실이 발생하거나 이용자가 변경될 경우 [서식 5] 공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경북경제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
 - 공실발생시 사업주 부담(단, 월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월세비용 전액지원)
 - 이중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(신규채용자)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2개월간 지원 유지(2개월 내 요건 충족 시 계속 지원)

5

사업참여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19. 4. 1.(월) ~ 사업비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
- 신청서류 :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

- ① [서식 1]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
- ② [서식 2] 기숙사 임차 지원금대상 근로자 명부 1부
- ③ [서식 3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- ④ [서식 4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- ⑤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,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⑥ 국세 완납증명서 1부
- ⑦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
- ⑧ 근로자 계약서 사본 각 1부
- ⑨ 재직증명서 각 1부
- ⑩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(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) 각 1부

- 신청방법
 - 신청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
- ※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
 - 신청서류를 일체 스캔하여 先이메일 제출 후, 後방문(우편) 제출 가능

○ 접수 및 문의

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김동균 대리

(주 소)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경북경제진흥원

(전 화) 054-275-2967

(팩 스) 054-275-2968

(이메일) kdk13@gepa.kr

6

[선정 후] 지원금 신청방법

○ 지원금 신청(월세비용 신청)

- 임차료(월세 80%) 청구는 3개월 단위 사후 신청

ex) 4월 1일 지원업체로 선정 되었고 근로자가 이전부터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
 ⇒ 3개월분(4. 1. ~ 6. 30.) 월세는 6월 30일 이후에 신청. 가급적 3개월분
 종료시점 기준 1주일 이내에 신청 요망

ex) 4월 1일 지원업체로 선정 되었으나 실 거주 시작일이 4월 5일인 경우
 ⇒ 3개월분(4. 1. ~ 6. 30.) 월세는 4월 5일 이후에 신청. 가급적
 2개월분 종료시점 기준 1주일 이내에 신청 요망

- 수혜기업 자부담(월세 20%)을 제외한 3개월치 월세비용 신청

ex) 4월~6월분 월세가 30만원×3개월 = 90만원일 경우
 ⇒ 수혜기업 자부담 20%(6만원)를 제외한 72만원을 사후 신청

○ 지원금 신청서류(지원업체로 선정된 경우만 해당)

- ① [서식 6] 기숙사 임차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
- ② 3개월분 월세 납부 확인서류(통장 또는 이체내역서 사본 등) 각 1부
- ③ 근로자 근무사실 확인서류(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) 각 1부
- ④ 기숙사 주소지가 기재된 근로자 전입신고 내역(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) 각 1부
 ※ 전입신고가 어려운 경우 [서식 7] 주거사실 확인서로 대체 가능
 → 사전에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
- ⑤ 사업자 통장사본 1부

- 첨 부
1. [서식 1]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
 2. [서식 2] 기숙사 임차 지원금대상 근로자 명부 1부
 3. [서식 3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 4. [서식 4]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약정서 1부
 5. [서식 5]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이용근로자 공실신고서 1부
 6. [서식 6] 기숙사 임차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
 7. [서식 7]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이용근로자 주거사실 확인서 1부. 끝.